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4. 원유검사의 공영화는 개정 낙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의 하나다. 객관성 있는 검사가 보장되어야 낙농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무기력한 진흥회가 검사를 집유 주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는 검사공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검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진흥회에서의 원유대 결정은 자칫 낙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유업체의 논리만 대변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진흥회의 구성을 보면 명약관화한 일이다.

유가 결정기구에 생산자 농민의 참여 폭이 확대되고 합리적이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유가 결정제도가

심도있게 연구도입되어야 한다.

6. 한국 낙농발전에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계절적 원유 수급의 불안정이다.

그나마 기업들이 책임지던 원유 수급의 책임을 아무런 재정적 기반도 없는 진흥회가 전국 우유수급을 책임질 때 비수기 체화되는 원유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의 원유수급 안정기금이라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7. 최저 생산비도 보장 안되는 현행 원유대는 상당부분 과도한 유통비용 때문이다.

과다한 물류비, 고임금 등등은 차치하고라도 판매확장 한담시고 냉장고 사주고 막대한 입점비 주고 천문학적 액수인 TV광고 때리고…….

이 모두가 생산자의 고통을 빠

는 것이다. 이런 부분의 지출금액은 줄잡아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다.

냉장고, 입점비, 광고 등을 없애고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는 공동홍보를 실시하여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상의 지적들이 실행되고 시정되어야 10여년 이상 끌어 천신만고 끝에 탄생시킨 개정 낙진법이 본래의 목적인 낙농진흥과 낙농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명실상부한 획기적인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실행전 남은 짧은기간 착실한 준비를 하여 착오없는 낙진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야 될 것이다. ☺



이 종 준
본회 부회장

소명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새로운 법인으로 구성될 진흥회는 기구의 구성과 구성원의 인선 작업은 물론 집유조합의 지정과 원유의 구매·공급계약 및 가격과 수급계획, 소비홍보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단체와의 이해관계로 많은 난제에 부딪칠 수 있다.

한국낙농산업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고 사심없는 업무처리로 국내 낙농산업발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이 땅에 낙농부국을 건설하여 국민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당시 지도자의 뜻에 따라 30년전에(1967년도) "낙농진흥법"은 제정되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결과 국

가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올림픽을 치루는 자랑스런 국가가 되었다.

이 기간동안 낙농산업 또한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였으나 법률제정 초기에 미쳐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유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되는 등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10년전부터 민간단체가 노력하였고, 7년전부터는(1990년5월) 정부부처(당시 농림수산부)가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특집

그러나, 이기적인 자세에 기인된 일부 낙농가와 단체의 반대로 다수의 낙농가가 원하는 법개정이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표류되다가 금년도 제 184회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가까스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나 자신과 내가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떠나 이나라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낙농진흥법이 국제 경쟁시대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법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서서 개정 촉구 서명작업이나 찬반 공청회 등에 수없이 참여하였고, 의원입법을 위한 국회의원의 동의를 청구에도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의 개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개정의 당위성이나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에 의해 이나라 낙농산업의 발전방향이 돌아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낙농가와 관련산업의 발전에 법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어렵게나마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나긴 산고를 거치면서 개정된 법안이 법개정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이나라 낙농산업의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새로이 구성될 낙농진흥회에 바라는 바를 큰 줄기만 몇가지 기술해 본다.

첫째, 소명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다분히 추상적인 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구성될 낙농진흥회는 그 역할의 막중함을 볼 때 이 주문을 제일 먼저하고 싶다.

새로운 법인으로 구성될 진흥회는 기구의 구성과 구성원의 인선 작업은 물론 집유조합의 지정과 원유의 구매·공급계약 및 가격과 수급계획, 소비홍보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단체와의 이해관계로 많은 난제에 부딪칠 수 있다.

한국낙농산업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고 사심없는 업무 처리로 국내 낙농산업발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둘째, 모두(낙농가와 가공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모든 낙농가와 모든 유업체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그 육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와 구입자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형평이 유지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집유권역별 집유조합의 지정 또한 대원칙에 입각한 타당성으로 설득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를 의식하는 방향 설정이 필수적이다.

잘 알다시피 유제품의 수입은 이미 자유화되어 있다.

국제수준 이상의 위생원유 생산과 (낙농가) 고품질의 유제품을 생산(유가공업체)하지 않는 한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내낙농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시급하다.

낙농 생산성의 향상과 원가절감(특히, 사료비의 절감)이 없이는 국제 경쟁력이 없다.

낙농가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원인분석과 신규참여의 보장이 필요하고 전업농의 육성과 검정사업이나 조사료의 자가생산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울러, 무분별한 유제품의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함을 유념하기 바란다.

다섯째, 시장의 개척과 수급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제품의 소비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홍보에는 자금도 필요하다.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의 수급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낙농진흥회에 바라는 몇가지 사항을 요약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년여의 세월이 그렇게 여유있는 시간이 아님을 주지하고 진흥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한국의 낙농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당국의 굳은 의지가 절실히 필요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래야만 국내 낙농산업은 국제 시장 개방하에서도 새로운 꽃을 피우며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다.☉